

공립어린이집(방림·봉평)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)에 의거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(방림·봉평)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어린이집 운영기준)
-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(위탁운영), 제15조(수탁자 선정), 제16조(위탁계약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3. 위탁운영 목적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
4. 시설현황

(단위 : 명, m²)

시설명	현수탁자	위치	아동 정원	아동 현원	교직원	연면적
공립방림어린이집	김순영	방림면 서동로 1346-4	21	11	5	281.05
공립봉평어린이집	최지현	봉평면 기풍로 121-19	52	40	12	579.41

5. 인력관리 현황

(단위 : 명)

시 설 명	계	원장	보육교사	조리사	운전기사
공립방림어린이집	5	1	2	1	1
공립봉평어린이집	12	1	9	1	1

6. 위탁 현황

시 설 명	수탁자	위탁기간(현재)	원장	비고
공립방림어린이집	김순영 (개인)	'23.04.01~'28.03.31 (5년)	김순영	변경위탁
공립봉평어린이집	최지현 (개인)	'23.03.01~'28.02.28 (5년)	최지현	변경위탁

7. 연간 예산지원 현황(2022년)

(단위:천원)

시 설 명	계	보육료	인건비	기타운영비	비고
공립방림어린이집	173,396	33,466	128,640	11,290	
공립봉평어린이집	389,609	137,103	214,839	37,667	

8. 위탁계획

- 위탁사무 :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
- 위탁방법 : 변경위탁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(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) 또는 개인
- 위탁기간
 - 공립방림 : 2023. 04. 01. ~ 2028. 03. 31.(5년)
 - 공립봉평 : 2023. 03. 01. ~ 2028. 02. 28.(5년)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·선정
 ⇨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,
 70점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

9. 위탁조건

-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전반(보육, 인사, 회계, 안전 등) 및 위탁시설 유지·관리
- 예산지원 : 종사자 인건비, 보육료 등
 ※ 단, 보건복지부 '보육사업지침'의 단가 및 지원 비율에 의함.

10. 향후 추진일정

-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: 2022. 11월
- 위탁체 선정 공고 : 2022. 12월
-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: 2023. 1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2023. 1월

11.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

12. 관련자료

- 관계법규 1부. 끝.

관계법규 발취

【 영유아보육법 】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】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【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】

제14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수탁자 선정)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6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